

제364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1월7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6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6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6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6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6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7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7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7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7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7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7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76.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2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
 278.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
 279.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80.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81.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82.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8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2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백재현·원혜영·박남춘·김경협·김성찬·김민기·설훈·노웅래·안규백·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 2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장우·이우현·홍문종·홍철호 의원 발의) 2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유성엽·김경진·정동영·이상돈·최경환(국)·이찬열·오제세·박준영·장병완·장정숙·박주선·채이배·김삼화·박주현·이용호·주승용·김병관·김광수·이종걸·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2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김철민·윤후덕·이철희·서영교·이해찬·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2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채이배·박주현·이용주·정인화·김중희·최경환(국)·최도자·김삼화·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0) 2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최도자 · 홍의락 · 한정애 · 전재수 · 이찬열 · 신창현 · 김정우 · 김병욱 · 윤후덕 · 서형수 · 박남춘 · 신동근 · 박재호 의원 발의) 2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김종희 · 정인화 · 최경환(국) · 최도자 · 손금주 · 김광수 · 이용주 · 조배숙 · 김경진 · 김동철 · 박주현 · 유성엽 · 주승용 · 김관영 · 이용호 · 신용현 · 박준영 · 장정숙 · 이동섭 · 송기석 · 장병완 · 오세정 · 김삼화 · 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2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도읍 · 김성찬 · 유재중 · 오신환 · 민경욱 · 김한표 · 홍철호 · 이우현 · 송석준 · 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02) 2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문미옥 · 김병관 · 김영주 · 원혜영 · 최인호 · 백재현 · 안규백 · 권철승 · 신경민 · 박남춘 · 전해철 의원 발의) 2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윤후덕 · 이개호 · 최도자 · 황주홍 · 서형수 · 김철민 · 김동철 · 문희상 · 조경태 의원 발의) 2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고용진 · 황희 · 이찬열 · 김종희 · 임종성 · 윤후덕 · 전해철 · 김해영 · 유은혜 · 전재수 · 박경미 · 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 2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채이배 · 윤종오 · 최경환(국) · 정인화 · 문미옥 · 박광온 · 황희 · 김종대 · 남인순 · 박경미 · 유승희 · 윤후덕 · 유은혜 · 김종훈 · 임종성 · 백재현 · 신창현 · 강창일 · 김정우 · 박남춘 · 위성곤 · 김광수 · 김해영 · 이훈 · 김영춘 · 강병원 · 유성엽 · 정동영 · 인재근 · 전해숙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 2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강창일 · 윤관석 · 박경미 · 전재수 · 원혜영 · 임종성 · 인재근 · 김영진 · 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 23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김종훈 · 추혜선 · 유은혜 · 김해영 · 권미혁 · 윤종오 · 박경미 · 송옥주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23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유은혜 · 김병관 · 채이배 · 어기구 ·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손혜원 · 송옥주 · 이언주 · 오제세 · 이철희 · 서영교 · 전해숙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 23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박덕흠 · 윤소하 · 김성태 · 김세연 · 김삼화 · 김상훈 · 이명수 · 이만희 · 김도읍 의원 발의) 23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학영 · 전현희 · 남인순 · 윤호중 · 이춘석 · 김영진 · 김해영 · 양승조 · 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 2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신창현 · 제윤경 · 김해영 · 박주민 · 박남춘 · 유은혜 · 소병훈 · 김종훈 · 송옥주 · 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 23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 · 김광수 · 이동섭 · 위성곤 · 황주홍 · 이찬열 · 정인화 · 송기석 · 김종희 · 박남춘 · 박선숙 · 김삼화 · 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7) 23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원욱 · 손금주 · 이동섭 · 조배숙 · 전현희 · 기동민 · 설훈 · 이개호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 23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어기구 · 김해영 · 안규백 · 박정 · 김성수 · 전해숙 · 김정우 · 변재일 · 서영교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23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권미혁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동영 · 양승조 · 황주홍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 23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신창현 · 최도자 · 윤소하 · 박준영 · 기동민 · 설훈 · 김경진 · 문미옥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 23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황주홍 · 김경진 · 박홍근 · 손혜원 · 박남춘 · 신창현 · 남인순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23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남인순 · 박주민 · 서형수 · 손혜원 · 송기현 · 신창현 · 오제세 · 윤관석 · 이찬열 · 전재수 · 최인호 · 추혜선 의원 발의) 23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손금주 · 김중로 · 이진복 · 김광림 · 홍철호 · 정성호 · 배덕광 · 박완수 · 이현재 의원 발의) 23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이만희 · 이현재 · 오신환 · 민경욱 · 지상욱 · 김도읍 · 김정재 · 김명연 · 이완영 · 김성찬 · 이현승 · 김태흠 · 김영춘 · 이개호 · 이양수 · 안상수 · 정인화 · 김종희 · 김현권 · 김철민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5) 23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 · 김두관 · 김종민 · 김현미 · 박광온 · 박정 · 박준영 · 이언주 · 정동영 · 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832) 23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강창일 · 김민기 · 김병욱 · 김영춘 · 노용래 · 도중환 · 안민석 · 오영훈 · 윤관석 · 전재수 · 전해철 · 전해숙 · 조배숙 · 황주홍 의원 발의) ... 23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소병훈 · 김영호 · 김영진 · 김정우 · 표창원 · 진선미 · 박남춘 · 최경환(국) · 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 23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안규백 · 이찬열 · 김관영 · 이종걸 · 최명길 · 김병욱 · 기동민 · 민병두 · 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208) 23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박경미 · 안규백 · 박홍근 · 윤소하 · 추혜선 · 정성호 · 김경진 · 어기구 · 김종희 · 이찬열 · 김종훈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김정우 · 황주홍 · 정동영 · 전해철 · 서영교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 23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박경미 · 안규백 · 박홍근 · 윤소하 · 추혜선 · 정성호 · 김경진 · 채이배 · 어기구 · 김종희 · 이찬열 · 김종훈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김정우 · 황주홍 · 정동영 · 전해철 · 서영교 · 박남춘 · 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24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서영교 · 윤관석 · 이재정 · 홍영표 · 손혜원 · 강병원 · 전해철 · 이찬열 · 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 24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추혜선 · 이정미 · 정성호 · 조배숙 · 김종훈 · 김종희 · 신창현 · 김정우 · 백혜련 · 전해숙 · 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 24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김성태 · 이현재 · 김종석 · 김성원 · 한선교 · 김선동 · 정우택 · 조훈현 · 권석창 · 심재철 의원 발의) 24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박성중 · 정운천 · 이명수 · 유민봉 · 김정우 · 김영진 · 진선미 · 권은희 · 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8) 24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김도읍 · 최연혜 · 강석호 · 민경욱 · 이철우 · 조훈현 · 정병국 · 김성원 · 곽대훈 · 정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4) 24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이찬열 · 김경수 · 홍익표 · 박재호 · 박찬대 · 김정우 · 윤후덕 · 이훈 · 박정 · 송옥주 · 송기현 · 채이배 · 어기구 · 신창현 · 김병관 · 박남춘 · 소병훈 · 이정미 의원 발의) 24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찬열 · 김정우 · 조승래 · 설훈 · 이해찬 · 손혜원 · 황주홍 · 지상욱 · 송옥주 · 전현희 의원 발의) 24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 · 김경진 · 권은희 · 오세정 · 장정숙 · 박주현 · 채이배 · 김종희 · 주승용 · 김광수 · 남인순 · 정인화 의원 발의) 2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승희 · 배덕광 · 윤소하 ·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 · 박재호 · 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 24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승희 · 배덕광 · 윤소하 ·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 · 박재호 · 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 2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김도읍 · 강석호 · 민경욱 · 조훈현 · 정병국 · 김성원 · 곽대훈 · 정운천 · 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3) 24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주승용 · 백재현 · 김종희 · 정인화 · 김관영 · 권은희 · 유성엽 · 이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901) 24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이태규 · 강창일 · 김정우 · 송영길 · 황주홍 · 김영호 · 전해숙 · 김상희 · 신창현 · 윤관석 · 김종훈 · 설훈 · 박남춘 · 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9) 24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윤호중 · 이동섭 · 김민기 · 이찬열 · 신경민 · 윤종오 · 우원식 · 권철승 · 박광온 · 전재수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 24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 · 김성원 · 김순례 · 민경욱 · 박덕흠 · 박순자 · 송희경 · 원유철 · 이우현 · 이현재 · 정갑윤 · 조원진 · 지상욱 의원 발의) 24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 · 황주홍 · 장정숙 · 신용현 · 김병기 · 이동섭 · 정인화 · 이태규 · 김삼화 · 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7) 24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김도읍 · 권석창 · 조훈현 · 김정재 · 정태욱 · 이은권 · 전희경 · 성일종 · 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51) 24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손혜원 · 송기현 · 김종민 · 민병두 · 유동수 · 홍익표 · 이원욱 · 김상희 · 이재정 · 정성호 · 서영교 · 전해철 · 김민기 · 설훈 · 김병관 · 유은혜 · 이철희 · 표창원 · 정재호 · 조승래 · 윤후덕 · 김영춘 · 박정 의원 발의) 25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김현아 · 이우현 · 박덕흠 · 김규환 · 김기선 · 광대훈 · 정유섭 · 지상욱 · 김석기 · 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173) 25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최명길 · 민병두 · 표창원 · 김해영 · 박찬대 · 이종걸 · 이철희 · 김관영 · 정인화 의원 발의) 25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온 · 이개호 · 전재수 · 이학영 · 박홍근 · 설훈 · 안민석 · 박경미 · 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 25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 · 장정숙 · 서영교 · 천정배 · 이동섭 · 김삼화 · 이용호 · 유동수 · 박준영 · 김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6) 25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권성동 · 정양석 · 정운천 · 오신환 · 이균현 · 이학재 · 김성태 · 하태경 · 김현아 · 홍철호 · 김세연 · 박인숙 · 이진복 · 강길부 · 홍일표 · 여상규 · 김재경 · 이종구 · 김학용 · 정병국 · 장제원 · 박성중 · 김무성 · 김영우 · 홍문표 · 주호영 · 김용태 · 유승민 · 유의동 · 이혜훈 · 이은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3) 25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의원 발의) 25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강훈식 · 권미혁 · 기동민 · 소병훈 · 윤관석 · 이원욱 · 인재근 · 최명길 · 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557) 25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오신환 · 장제원 · 박인숙 · 정운천 · 김성태 · 이진복 · 하태경 · 강길부 · 주호영 · 정성호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 25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원혜영 · 유승희 · 이용득 · 김두관 · 박주민 · 제윤경 · 강병원 · 유동수 · 설훈 · 김철민 · 최운열 · 김병기 · 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 25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설훈 · 김영호 · 김상희 · 김두관 · 제윤경 · 이용득 · 강병원 · 김병기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 25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김현권 · 황주홍 · 이철희 · 신경민 · 백재현 · 심재권 · 박홍근 · 김병욱 · 위성곤 · 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2) 25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 25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정병국 · 하태경 · 정우택 · 김현아 · 홍철호 · 이양수 · 박성중 · 조훈현 · 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3) 25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김중로 · 전해숙 · 김정우 · 이동섭 · 김경진 · 홍영표 · 조배숙 · 이용호 · 천정배 의원 발의) 25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박덕흠 · 이철규 · 송기현 · 하태경 · 김용태 · 장석춘 · 정양석 · 홍일표 · 박순자 · 박명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4) 25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서영교 · 서형수 · 전재수 · 이찬열 · 윤호중 · 이동섭 · 권철승 · 최인호 · 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63) 25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완수 · 김기선 · 곽대훈 · 정유섭 · 김성원 · 전희경 · 염동열 · 권석창 · 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3) 25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김영진 · 진선미 · 김정우 · 소병훈 · 박남춘 · 백재현 · 표창원 · 김영호 · 금태섭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25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 · 김성수 · 이용득 · 서영교 · 김종훈 · 유은혜 · 박홍근 · 고용진 · 김수민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 26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박정 · 백재현 · 조정식 · 이개호 · 최인호 · 이재정 · 문희상 · 우원식 · 이종걸 의원 발의) 26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홍문표 · 주호영 · 김무성 · 이종구 · 유승민 · 하태경 · 정운천 · 정병국 · 홍철호 · 황영철 · 정양석 · 여상규 · 김성태 · 김재경 · 이학재 · 오신환 · 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26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 · 박지원 · 주승용 · 김경진 · 이태규 · 김종희 · 김삼화 · 오세정 · 천정배 · 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3) ... 26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표창원 · 노웅래 · 김영호 · 박정 · 김상희 · 원혜영 · 위성곤 · 이철희 · 이원욱 · 심기준 · 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2) 26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김현아 · 정양석 · 김재경 · 황주홍 · 박인숙 · 정병국 · 유승민 · 하태경 · 이종구 의원 발의) 26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권성동 · 김현아 · 김영우 · 오신환 · 이종구 · 정병국 · 주호영 · 신보라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8) 26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이철희 · 조승래 · 김영호 · 권미혁 · 전해숙 · 유동수 · 강창일 · 우원식 · 전재수 · 어기구 · 강훈식 · 문미옥 · 강병원 · 제윤경 · 박경미 · 이용득 · 백재현 · 박찬대 · 설훈 · 유은혜 · 안호영 · 김철민 · 송영길 · 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 ... 26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전재수 · 박남춘 · 신창현 · 송옥주 · 노웅래 · 박홍근 · 안민석 · 소병훈 · 조승래 · 설훈 · 이용득 · 이해찬 의원 발의) 26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인재근 · 김병욱 · 김영호 · 권미혁 · 전해숙 · 박영선 · 윤관석 · 김태년 · 고용진 · 김상희 · 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 26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강병원 · 김병욱 · 도종환 · 손혜원 · 안민석 · 오영훈 · 유은혜 · 윤후덕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2) 26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유기준 · 김명연 · 김승희 · 김태흠 · 정태욱 · 이채익 · 김성원 · 정갑윤 · 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981) 26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김병욱 · 노웅래 · 조승래 · 인재근 · 정성호 · 위성곤 · 윤관석 · 윤종오 · 박홍근 · 송기현 · 신창현 · 박정 의원 발의) 26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정동영 · 장정숙 · 김경진 · 정인화 · 황주홍 · 노웅래 · 김관영 · 이용호 · 윤영일 의원 발의) 26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강훈식 · 고용진 · 김경협 · 김병욱 · 김상희 · 김영주 · 김영춘 · 김철민 · 김한정 · 문미옥 · 박정 · 백혜련 · 설훈 · 소병훈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어기구 · 위성곤 · 유동수 · 이개호 · 이원욱 · 전현희 · 조승래 · 최윤열 · 최인호 · 표창원 · 송기현 · 진영 · 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 26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김세연 · 윤종오 · 조배숙 · 진선미 · 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6) 26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강훈식 · 고용진 · 노웅래 · 김경협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영주 · 김영춘 · 김철민 · 김한정 · 문미옥 · 박정 · 백혜련 · 설훈 · 소병훈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어기구 · 위성곤 · 유동수 · 이개호 · 이원욱 · 전현희 · 조승래 · 송기현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 26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안규백 · 이원욱 · 원혜영 · 임종성 · 조배숙 · 홍의락 · 김관영 · 서형수 · 강훈식 · 조승래 · 노웅래 · 김상희 · 권칠승 · 박찬대 · 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4) 26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이동섭 · 조배숙 · 오세정 · 김삼화 · 권은희 · 주승용 · 최명길 · 최도자 · 이찬열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 27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김종훈 · 정동영 · 문진국 · 김종대 · 이정미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이용호 · 서형수 의원 발의) 27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노웅래 · 안규백 · 문진국 · 이원욱 · 원혜영 · 김병욱 · 서형수 · 조승래 · 권칠승 · 박찬대 · 김정우 ·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7) 27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윤관석 · 안민석 · 유은혜 · 전해숙 · 김민기 · 이찬열 · 윤호중 · 정춘숙 · 오영훈 · 양승조 · 김병기 · 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27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유동수 · 이개호 · 유승희 · 백혜련 · 어기구 · 김영주 · 박정 · 권칠승 · 김종민 · 설훈 · 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6) 27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 · 박경미 · 김경협 · 이춘석 · 표창원 · 박용진 · 신창현 · 최명길 · 강훈식 · 노웅래 · 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7411) 27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 · 김정우 · 김병욱 · 채이배 · 박범계 · 장정숙 · 안호영 · 박용진 · 박남춘 · 소병훈 · 민병두 · 송옥주 · 노웅래 · 권미혁 · 박정 의원 발의) 27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박범계 · 전해숙 · 홍익표 · 백혜련 · 서영교 · 이종걸 · 인재근 · 이원욱 · 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7529) 27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종석 · 김도읍 · 최연혜 · 곽대훈 · 유민봉 · 김기선 · 이명수 · 염동열 · 홍철호 · 신보라 · 김진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79) 27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 · 김병관 · 이동섭 · 고용진 · 김경진 · 이용호 · 노웅래 · 김영주 · 최운열 · 장병완 · 김관영 · 김성수 의원 발의) 27
-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함진규 · 홍문표 · 김성원 · 윤영석 · 김규환 · 유재중 · 김재원 · 최연혜 · 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7) 27
-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이용득 · 신창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 27
-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유은혜 · 기동민 · 김상희 · 이인영 · 박홍근 · 김영진 · 오영훈 · 설훈 · 정재호 · 소병훈 · 강창일 · 박정 의원 발의) 27
-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철희 · 윤소하 · 박주민 · 원혜영 · 송옥주 · 신창현 · 김철민 · 소병훈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27
-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김해영 · 손혜원 · 박경미 · 박정 · 조승래 · 김병욱 · 박남춘 · 안규백 · 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8) 27
-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 · 이은권 · 윤영석 · 추경호 · 박완수 · 김진태 · 윤한홍 · 김석기 · 주광덕 · 정갑윤 의원 발의) 27
-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이종배 · 이철규 · 염동열 · 김석기 · 이은재 · 권석창 · 이양수 · 이현승 · 강석진 · 김도읍 · 민경욱 의원 발의) 27
-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해영 · 변재일 · 설훈 · 위성곤 · 윤소

하 · 정춘숙 · 조승래 · 최명길 · 홍익표 의원 발의)	27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도읍 · 곽대훈 · 이채익 · 염동열 · 김정재 · 박명재 · 정갑윤 · 박덕흠 · 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4)	27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채이배 · 박주민 · 김경진 · 노회찬 · 김종대 · 김종민 · 이정미 · 윤소하 · 김영호 · 권미혁 · 표창원 · 한정애 · 심상정 · 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8)	27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	28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윤후덕 · 윤한홍 · 김명연 · 박명재 · 이양수 · 박덕흠 · 유민봉 · 조훈현 · 윤영일 의원 발의)	28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고용진 · 김민기 · 조승래 · 서형수 · 박재호 · 전재수 · 윤호중 · 박광온 · 박홍근 · 윤소하 · 이찬열 · 최인호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	28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병욱 · 신경민 · 권미혁 · 소병훈 · 박정 · 윤소하 · 정재호 · 김현권 · 양승조 의원 발의)	28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 · 이철희 · 이춘석 · 박영선 · 표창원 · 박범계 · 손금주 · 금태섭 · 박홍근 · 고용진 · 임종성 · 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8)	28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강길부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태 · 박인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종구 · 이학재 · 이혜훈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 · 하태경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70)	28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주호영 · 이혜훈 · 이학재 · 이종구 · 김세연 · 정병국 · 유승민 · 박인숙 · 지상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8)	28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이재정 · 김두관 · 진선미 · 이훈 · 김현권 · 유은혜 · 윤종오 · 김정우 · 전해철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	28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강창일 · 김영진 · 김철민 · 박남춘 · 박주민 · 설훈 · 인재근 · 정성호 · 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2)	28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소병훈 · 박범계 · 노웅래 · 김정우 · 이연주 · 이재정 · 이원욱 · 양승조 · 김병욱 · 조승래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113)	28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조배숙 · 장정숙 · 금태섭 · 서영교 · 이철희 · 박광온 · 이수혁 · 정성호 · 김해영 · 김한정 · 박정 의원 발의)	28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조승래 · 김영호 · 표창원 · 소병훈 · 손금주 · 이철희 · 금태섭 · 정성호 · 신창현 의원 발의)	28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 · 정병국 · 정양석 · 이상돈 · 정운천 · 홍철호 · 하태경 · 오신환 · 김무성 · 주호영 · 이연주 의원 발의)	28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 · 정종섭 · 박덕흠 · 김성원 · 곽상도 · 이종배 · 이은재 · 곽대훈 · 최연혜 · 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465)	28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정성호 · 김세연 · 이명수 · 이종구 · 정양석 · 오신환 · 유승민 · 김철민 · 정병국 의원 발의)	28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강길부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우 · 성일종 · 박인숙 · 유승민 · 이명수 · 이종구 · 윤영석 · 윤한홍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하태경 · 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5)	28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 · 김선동 · 김성원 · 김태흠 · 박덕흠 · 성일종 · 이명수 · 이은권 · 정유섭 · 홍문표 의원 발의)	28

-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노웅래 · 김병욱 · 박정 · 이정미 · 임종성 · 소병훈 · 박주민 · 이해찬 · 김정우 · 신창현 · 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5) 28
-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유의동 · 김세연 · 강병원 · 박인숙 · 강길부 · 김수민 · 최도자 · 지상욱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7) 28
-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소병훈 · 인재근 · 표창원 · 민홍철 · 백재현 · 기동민 · 정춘숙 · 김영진 · 전해숙 의원 발의) 29
-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 · 박성중 · 문진국 · 이명수 · 강석호 · 장제원 · 金成泰 · 이은권 · 곽대훈 · 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3) 29
-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성일종 · 신상진 · 안상수 · 송희경 · 김명연 · 문진국 · 이은권 · 이종배 · 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1) 29
-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김영호 · 김철민 · 임종성 · 김종대 · 안규백 · 고용진 · 기동민 · 윤관석 · 민홍철 · 박정 · 김상희 · 김성수 · 김정우 · 서형수 · 소병훈 의원 발의) 29
-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 · 박주민 · 하태경 · 오세정 · 오신환 · 김현아 · 김삼화 · 김중로 · 송기석 · 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58) 29
-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성찬 · 권석창 · 유민봉 · 박순자 · 성일종 · 윤재옥 · 유재중 · 장제원 · 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6) 29
-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송희경 · 이종구 · 강길부 · 홍문표 · 하태경 · 김학용 · 조경태 · 김현아 · 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72) 29
-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민홍철 · 송옥주 · 손금주 · 유동수 · 남인순 · 신창현 · 정성호 · 김정우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27) 29
-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윤종오 · 김종훈 · 김상희 · 이철희 의원 발의) 29
-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 · 원혜영 · 정성호 · 안규백 · 김영호 · 박찬대 · 박정 · 정춘숙 · 김현권 · 이철희 의원 발의) 29
-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 · 윤상현 · 함진규 · 정유섭 · 유민봉 · 김성태 · 김성원 · 이완영 · 홍문표 · 김승희 의원 발의) 29
-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이종명 · 추경호 · 김승희 · 최도자 · 김정훈 · 김석기 · 강석진 · 박인숙 · 이완영 의원 발의) 29
-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박지원 · 천정배 · 조배숙 · 윤영일 · 박주선 · 유성엽 · 장병완 · 김경진 · 최경환(국) · 김종희 · 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41) 29
-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권은희 · 김경진 · 김삼화 · 김성수 · 신용현 · 심기준 · 오세정 · 이동섭 · 이태규 · 조경태 · 하태경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24) 29
-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이춘석 · 백혜련 · 윤호중 · 남인순 · 오영훈 · 이용득 · 기동민 · 박남춘 · 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65) 29
-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송옥주 · 추혜선 · 김경협 · 정성호 · 김종훈 의원 발의) 29
-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 · 최도자 · 오세정 · 손금주 · 정동영 · 황주홍 · 김수민 · 윤영일 · 박지원 · 장정숙 의원 발의) 29
-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조훈현 · 김석기 · 박대출 · 문진국 · 김성찬 · 강석진 · 김도읍 · 최교일 · 이진복 · 김학용 · 민경욱 · 성일종 · 정태욱 · 유재중 · 최연혜 · 이종배 · 김기선 · 정종섭 · 백승주 · 金成泰 · 유민봉 · 신보라 · 주광덕 · 장석춘 · 이은권 · 김승희 · 신상진 · 김종석 · 김한표 · 윤한홍 의원 발의) 29
-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이은재 · 金成泰 · 박순자 · 장제원 · 송희경 · 강석호 · 홍문표 · 이종구 · 김상훈 · 곽대훈 · 김성찬 · 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41) 29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이은재 · 김성태 · 박순자 · 장제원 · 강석호 · 홍문표 · 김상훈 · 광대훈 · 김성찬 · 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53) 29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명연 · 최연혜 · 이채익 · 이진복 · 박맹우 · 윤한홍 · 김진태 · 김종석 · 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9) 29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이양수 · 민경욱 · 이명수 · 정우택 · 유기준 · 김재원 · 홍문중 · 김태흠 · 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5) 30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윤종필 · 홍문표 · 함진규 · 문진국 · 박명재 · 김선동 · 이종명 · 최교일 · 하태경 의원 발의) 30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원혜영 · 전현희 · 백재현 · 김상희 · 권칠승 · 윤영일 · 이동섭 · 김철민 · 윤관석 · 이학영 의원 발의) 30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 · 안상수 · 김태흠 · 홍문중 · 임이자 · 김성찬 · 이현승 · 함진규 · 이만희 · 강석진 의원 발의) 30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김병기 · 문희상 · 김병욱 · 박정 · 김현권 · 민홍철 · 안호영 · 임종성 · 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33) 30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문희상 · 노웅래 · 소병훈 · 이수혁 · 김한정 · 권칠승 · 설훈 · 이개호 · 황희 · 이용득 · 김철민 · 전해철 · 박경미 · 표창원 · 오세정 · 김병기 · 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73) 30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윤영석 · 추경호 · 이철규 · 이만희 · 김석기 · 송희경 · 민경욱 · 장석춘 · 김명연 · 유민봉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1) 30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김병관 · 박찬대 · 서형수 · 신용현 · 유승민 · 이동섭 · 이상돈 · 정병국 · 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02) 30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 · 윤후덕 · 신창현 · 송옥주 · 강훈식 · 황희 · 문희상 · 황주홍 · 권칠승 · 소병훈 의원 발의) 30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강석진 · 김무성 · 김성원 · 김재원 · 박인숙 · 윤종필 · 정유섭 · 주호영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6) 30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윤한홍 · 권성동 · 박성중 · 이은권 · 김재경 · 광상도 · 이명수 · 김선동 · 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75) 30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 · 여상규 · 박맹우 · 추경호 · 이채익 · 성일중 · 유민봉 · 이찬열 · 김정재 · 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54) 30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 · 김영우 · 박성중 · 이만희 · 신보라 · 송희경 · 홍철호 · 원유철 · 강석진 · 정갑윤 · 성일중 · 최교일 · 이은권 의원 발의) 30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김진태 · 전희경 · 김성원 · 김학용 · 김성찬 · 홍일표 · 이종배 · 김선동 · 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36) 30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박주민 · 서형수 · 손혜원 · 송옥주 · 신창현 · 유승희 · 이용득 · 정춘숙 의원 발의) 30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임이자 · 광대훈 · 추경호 · 이은권 · 정갑윤 · 박명재 · 박덕흠 · 김석기 · 김명연 · 주광덕 · 유기준 · 정태욱 · 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9) 30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이종명 · 김정재 · 문진국 · 원유철 · 권성동 · 정태욱 · 임이자 · 조훈현 · 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21) 30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오제세 · 민홍철 · 최경환(평) · 서영교 · 표창원 · 유동수 · 원혜영 · 윤관석 · 윤후덕 의원 발의) 30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 · 이춘석 · 김중로 · 송옥주 · 손혜원 · 이철희 · 신경민 · 홍의락 · 변재일 · 표창원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29) 30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임종성 · 강훈식 · 안규백 · 유동수 · 박주민 · 인재근 · 강창일 · 김영진 · 박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8) 30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권칠승 · 박정 · 안규백 · 진선미 · 김성수 · 김해영 · 윤호중 · 변재일 · 강훈식 의원 발의) 30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 · 주호영 · 신상진 · 김정재 · 이은권 · 정우택 · 함진규 · 정종섭 · 박완수 · 김현아 의원 발의) 31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권미혁 · 윤후덕 · 김상희 · 김경협 · 이수혁 · 윤관석 · 김민기 · 김성수 · 인재근 의원 발의) 31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박맹우 · 신보라 · 이채익 · 이종명 · 송희경 · 김석기 · 이정현 · 김진태 · 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96) 31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 · 장정숙 · 이상돈 · 천정배 · 박지원 · 조배숙 · 윤영일 · 김경진 · 이용주 · 유성엽 · 장병완 · 최경환(평) · 김종희 · 김광수 · 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4) 31
-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신보라 · 박인숙 · 김기선 · 추경호 · 박순자 · 광대훈 · 김순례 · 이만희 · 백승주 의원 발의) 31
-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 · 장석춘 · 김성태 · 추경호 · 이종배 · 김정재 · 박순자 · 김성원 · 조훈현 · 서청원 · 원유철 의원 발의) 31
-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박인숙 · 임이자 · 박덕흠 · 윤영석 · 김석기 · 김명연 · 김정재 · 민경욱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2) 31
-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이찬열 · 김관영 · 박선숙 · 신용현 · 이학재 · 김성식 · 오세정 · 주승용 · 김규환 · 정운천 · 김삼화 · 손금주 · 최도자 · 김중로 의원 발의) 31
-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김관영 · 채이배 · 유의동 · 최도자 · 신용현 · 김수민 · 이태규 · 김삼화 · 이동섭 · 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60) 31
-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이명수 · 백승주 · 윤종필 · 조경태 · 이현재 · 이종배 · 윤한홍 · 신상진 · 최교일 · 김순례 의원 발의) 31
-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 · 김규환 · 장제원 · 이찬열 · 심재철 · 金成泰 · 이태규 · 송희경 · 이은권 · 김순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23) 31
-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김현권 · 윤영일 · 권칠승 · 안민석 · 조정식 · 신창현 · 위성곤 · 이수혁 · 전해숙 의원 발의) 31
-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김성원 · 주광덕 · 김정재 · 송희경 · 이양수 · 장석춘 · 이명수 · 조원진 · 나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73) 31
-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김중로 · 이동섭 · 신용현 · 임이자 · 하태경 · 김수민 · 최도자 · 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80) 31
-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김중로 · 이동섭 · 신용현 · 임이자 · 하태경 · 김수민 · 최도자 · 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12) 31
-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문진국 · 장석춘 · 윤종필 · 이진복 · 염동열 · 정갑윤 · 원유철 · 함진규 · 김삼화 의원 발의) 31
-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권은희 · 김수민 · 이혜훈 · 신용현 · 이동섭 · 정병국 · 김삼화 · 오세정 · 정운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15) 31
-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이동섭 · 신용현 · 김영호 · 김중로 · 권은희 · 채이배 · 김수민 · 백재현 · 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5) 31
-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 · 이은권 · 김종석 · 김순례 · 김성원 · 성일중 · 김성태 · 문진국 · 정유섭 · 광상도 의원 발의) 31
-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송갑석 · 박주현 · 김광수 · 조정식 · 이

춘석·이찬열·김철민·고용진·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89) 31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김철민·권칠승·고용진·송갑석·신창현·김병관·심재권·안호영·윤후덕 의원 발의) 31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김병욱·임종성·소병훈·김영진·신동근·김해영·최운열·전현희·이수혁 의원 발의) 32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유기준·신보라·김광림·곽대훈·추경호·박완수·이장우·정중섭·강효상·조훈현 의원 발의) 32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홍의락·조정식·김병기·김정우·박찬대·추미애·김민기·박정·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03) 32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권칠승·손혜원·송옥주·이채익·강길부·정세균·김병기·윤영일·조승래·김종훈·박맹우·안민석·안규백 의원 발의) 32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추경호·박완수·김태흠·김광림·정태욱·김기선·성일종·신상진·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9) 32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이동섭·박선숙·신용현·김수민·김동철·채이배·김삼화·김성식·김광수 의원 발의) 32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수민·이찬열·김중로·정동영·김광수·조배숙·최도자·유성엽·김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68) 32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홍문표·유성엽·유의동·김광림·이양수·이학재·엄용수·홍철호·박맹우 의원 발의) 32

1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32

1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맹우·박덕흠·김성태·홍문표·김광림·이우현·김기선·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32

2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김명연·정태욱·배덕광·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32

2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 32

2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희·정재호·박광온·김병관·추미애·권칠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32

2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훈·송기석·윤후덕·이개호·송옥주·이춘석·김철민·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 32

2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문미옥·이춘석·김정우·박경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32

2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32

2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정성호·박정·신창현·황주홍·황희·서영교·박남춘·박주민·소병훈·전해철 의원 발의) 32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상희·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32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32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이원욱·황희·박홍근·박재호·박광온·김해영·정재호·설훈 의원 발의) 32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홍문표·이동섭·김관영·조배숙

· 박준영 · 김종희 · 황주홍 · 유성엽 · 김중로 · 김영춘 · 김철민 의원 발의)	32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전재수 · 박홍근 · 인재근 · 강창일 · 서영교 · 소병훈 · 김정우 · 박찬대 · 강병원 · 윤관석 · 박주민 · 윤소하 · 유승희 · 이재정 의원 발의)	32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김무성 · 이종구 · 황영철 · 주호영 · 이은재 · 하태경 · 지상욱 · 정양석 · 김영우 · 박인숙 · 김학용 의원 발의)	33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유승희 · 박정 · 인재근 · 김철민 · 김상희 · 이재정 · 김정우 · 표창원 · 진선미 · 김영진 · 박남춘 · 김영호 의원 발의)	33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임종성 · 김철민 · 유승희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혜영 · 조승래 · 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	33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임종성 · 김철민 · 유승희 · 이원욱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33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덕흠 · 이은재 · 이철우 · 김기선 · 염동열 · 이종배 · 이명수 · 권성동 · 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33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강병원 · 김병기 · 김영주 · 김철민 · 박주민 · 박광온 · 박정 · 이원욱 · 유승희 · 최인호 의원 발의)	33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이용득 · 신창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33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권칠승 · 김민기 · 김병욱 · 김정우 · 김해영 · 박남춘 · 박정 · 백재현 · 송옥주 · 안민석 · 오영훈 · 유은혜 · 윤관석 · 이용득 · 이해찬 · 정춘숙 · 고용진 · 추미애 · 홍의락 의원 발의)	33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윤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	33
2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재 · 김태흠 · 성일종 · 김명연 · 윤영석 · 이채익 · 광대훈 · 김기선 · 이현승 · 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33
2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 · 오세정 · 김광수 · 장정숙 · 김동철 · 박주현 · 박준영 · 김삼화 · 김경진 · 조배숙 · 전해숙 의원 발의)	33
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종희 · 최경환(국) · 민홍철 · 윤소하 · 오세정 · 김성식 · 정인화 · 김광수 · 이용주 의원 발의)	33
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 · 원혜영 · 정성호 · 안규백 · 김영호 · 박찬대 · 박정 · 정춘숙 · 소병훈 · 김현권 의원 발의)	33
2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 · 김경진 · 유성엽 · 윤영일 · 이용주 · 박준영 · 박주현 · 박지원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조배숙 의원 발의)	33
2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최도자 · 이찬열 · 이동섭 · 김삼화 · 주승용 · 김수민 · 김관영 · 오세정 · 김동철 의원 발의)	33
2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 · 신창현 · 박재호 · 이원욱 · 안규백 · 김영진 · 심재권 · 민홍철 · 어기구 · 김정우 의원 발의)	33
2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김병기 · 문희상 · 박정 · 김현권 · 안호영 · 최인호 · 김경협 · 백혜련 · 김민기 의원 발의)	33
2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김종민 · 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61)	33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광수 · 김경진 · 조경태 · 김종희 · 장병완 · 위성곤 · 이찬열 · 이연주 · 김중로 의원 발의)	33

-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박광은 · 김종민 · 권칠승 · 전현희 · 송갑석 · 김두관 · 윤준호 · 백혜련 · 이춘석 · 정재호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78) 33
-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상희 · 유은혜 · 심상정 · 유동수 · 윤소하 · 인재근 · 이정미 · 맹성규 · 윤후덕 · 제윤경 · 심기준 · 박홍근 · 이용득 · 박정 · 노웅래 · 설훈 · 소병훈 · 윤준호 · 서삼석 · 신창현 · 박찬대 · 송갑석 · 김철민 · 김영호 의원 발의) 33
- 2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은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윤후덕 · 서영교 · 박남춘 · 김철민 · 이해찬 · 이철희 의원 발의) 34
- 2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채이배 · 박주현 · 이용주 · 정인화 · 김종희 · 최경환(국) · 최도자 · 김삼화 · 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 34
- 2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유은혜 · 서형수 · 정재호 · 최인호 · 박재호 · 위성곤 · 강병원 · 이종걸 · 윤후덕 · 김해영 · 신동근 · 안호영 · 신경민 · 김철민 의원 발의) ... 34
- 2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홍익표 · 황희 · 박재호 · 윤관석 · 문미옥 · 김해영 · 김태년 · 제윤경 · 추미애 · 이원욱 · 김영진 의원 발의) 34
- 2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윤후덕 · 이원욱 · 황희 · 정재호 · 박광은 · 김병관 · 추미애 · 권칠승 · 김철민 · 서영교 · 박남춘 의원 발의) 34
- 2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해영 · 박광은 · 정재호 · 문미옥 · 이춘석 · 김정우 · 김성수 · 박정 · 권미혁 의원 발의) 34
-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김해영 · 문희상 · 이찬열 · 이춘석 · 윤호중 · 이동섭 · 김경협 · 원혜영 · 김정우 · 전해숙 · 김진표 · 고용진 · 윤관석 의원 발의) 34
-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김용태 · 김승희 · 임이자 · 김종석 · 김성태 · 이은권 · 유재중 · 김규환 · 유민봉 의원 발의) 34
-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김도읍 · 김명연 · 김성찬 · 김영춘 · 김정재 · 김중회 · 김철민 · 김태흠 · 김현권 · 민경욱 · 안상수 · 오신환 · 이개호 · 이만희 · 이양수 · 이완영 · 이현승 · 이현재 · 정인화 · 지상욱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4) 34
-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민병두 · 최명길 · 위성곤 · 김정우 · 전해철 · 유동수 · 고용진 · 김상희 · 유은혜 · 강창일 · 황주홍 · 박재호 · 박홍근 · 이학영 의원 발의) ... 34
-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장정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 이재정 의원 발의) 34
-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6) 34
- 2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선동 · 이현재 · 하태경 · 김성원 · 김성찬 · 함진규 · 이종배 · 조경태 · 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34
- 2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조승래 · 백혜련 · 김병욱 · 소병훈 · 신창현 · 박영선 · 어기구 · 강병원 · 최운열 · 안호영 의원 발의) 34
- 2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임종성 · 김철민 · 유승희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혜영 · 조승래 · 위성곤 의원 발의) 34
- 2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대 · 윤소하 · 심상정 · 이원욱 · 김세연 · 김현아 · 윤종오 · 조배숙 의원 발의) 34
- 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선동 · 함진규 · 이종배 · 김성찬 · 정갑윤 · 하태경 · 박명재 · 김석기 · 경대수 · 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 34
- 2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 · 이해찬 · 노웅래 · 박찬대 · 신창현 · 송옥주 · 제윤경 · 권미혁 · 유동수 · 김종민 의원 발의) 34
- 2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유동수 · 어기구 · 신창현 · 제윤경 · 유은혜 · 고용진 · 이용득 · 김철민 · 권미혁 · 민홍철 · 박정 · 기동민 의원 발의) 34

2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이용득 · 신창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	35
2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	35
2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경대수 · 김도읍 · 김정재 · 김한표 · 박덕흠 · 박명재 · 박완수 · 엄용수 · 이은권 · 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044)	35
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소병훈 · 강훈식 · 기동민 · 유은혜 · 서영교 · 권미혁 · 임종성 · 설훈 의원 발의)	35
2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 · 유민봉 · 김정재 · 정갑윤 · 정태욱 · 박찬우 · 윤영석 · 김성찬 · 이우현 · 염동열 의원 발의)	35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춘숙 · 표창원 · 양승조 · 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6)	35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심기준 · 문희상 · 제윤경 · 김해영 · 전재수 · 김현권 · 소병훈 · 이철희 · 권철승 · 고용진 의원 발의)	35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천정배 · 이용호 · 장정숙 · 유성엽 · 최도자 · 박주민 · 황주홍 · 장병완 · 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86)	35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 · 이은권 · 김종석 · 김순례 · 김성원 · 성일종 · 김성태 · 문진국 · 정유섭 · 박상도 의원 발의)	35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상희 · 유은혜 · 심상정 · 유동수 · 윤소하 · 인재근 · 이정미 · 맹성규 · 윤후덕 · 제윤경 · 심기준 · 박홍근 · 이용득 · 박정 · 노웅래 · 설훈 · 소병훈 · 윤준호 · 서삼석 · 신창현 · 박찬대 · 송갑석 · 김철민 · 김영호 의원 발의)	35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소병훈 · 정춘숙 · 이규희 · 송옥주 · 위성곤 · 김성수 · 김영진 · 김성환 · 박찬대 의원 발의)	35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 · 조훈현 · 이채익 · 박명재 · 정병국 · 이철규 · 정운천 · 홍문표 · 송언석 · 김석기 · 홍철호 의원 발의)	35
26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35
26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35
26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6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6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6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35
27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35
276.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8.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79.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35
280.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281.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36
 282.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36
 28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36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우리 특위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지는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리얼미터의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신뢰도 1.8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 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잘 이루어서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합의로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가 담겨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개특위의 짐을 덜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국민만 바라보고 선거제도 개혁에 노력한다면 국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장식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교일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서 오신 최교일 위원님과 또 그동안 해외국감으로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원혜영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원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해외 국정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몇 가지 정말 일반적으로는 넘기 힘든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개혁특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을 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아울러 김종민 소위원장님과 정유섭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 심사에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의원 공론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TF 위원장에는 원혜영 위원님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공론화 TF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국회의원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소통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공론화 TF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우리 특위에 정계의 원로분들과 학계·언론·시민사회계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문위원회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197건, 정당법 개정안 35건, 정치자금법 개정안 31건 그리고 관련된 청원 19건 등 282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정치개혁

특위 논의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3항까지를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경과 보고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대체토론이 있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고요. 그리고 바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경과 보고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 상정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7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상정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7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백재현 · 원혜영 · 박남춘 · 김경협 · 김성찬 · 김민기 · 설훈 · 노웅래 · 안규백 · 윤관석 · 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홍문표 · 김태흠 · 경대수 · 황영철 · 권성동 · 이장우 · 이우현 · 홍문종 · 홍철호 의원 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이동섭 · 유성엽 · 김경진 · 정동영 · 이상돈 · 최경환(국) · 이찬열 · 오제세 · 박준영 · 장병완 · 장정숙 · 박주선 · 채이배 · 김삼화 · 박주현 · 이용호 · 주승용 · 김병관 · 김광수 · 이종걸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운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김철민 · 윤후덕 · 이철희 · 서영교 · 이해찬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채이배 · 박주현 · 이용주 · 정인화 · 김종회 · 최경환(국) · 최도자 · 김삼화 · 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0)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최도자 · 홍의락 · 한정애 · 전재수 · 이찬열 · 신창현 · 김정우 · 김병욱 · 윤후덕 · 서형수 · 박남춘 · 신동근 · 박재호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김종회 · 정인화 · 최경환(국) · 최도자 · 손금주 · 김광수 · 이용주 · 조배숙 · 김경진 · 김동철 · 박주현 · 유성엽 · 주승용 · 김관영 · 이용호 · 신용현 · 박준영 · 장정숙 · 이동섭 · 송기석 · 장병완 · 오세정 · 김삼화 · 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도읍 · 김성찬 · 유재중 · 오신환 · 민경욱 · 김한표 · 홍철호 · 이우현 · 송석준 · 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0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문미옥 · 김병관 · 김영주 · 원혜영 · 최인호 · 백재현 · 안규백 · 권칠승 · 신경민 · 박남춘 · 전해철 의원 발의)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윤후덕 · 이개호 · 최도자 · 황주홍 · 서형수 · 김철민 · 김동철 · 문희상 · 조정태 의원 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고용진 · 황희 · 이찬열 · 김종회 · 임종성 · 윤후덕 · 전해철 · 김혜영 · 유은혜 · 전재수 · 박경미 · 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채이배 · 윤종오 · 최경환(국) · 정인화 · 문미옥 · 박광운 · 황희 · 김중대 · 남인순 · 박경미 · 유승희 · 윤후덕 · 유은혜 · 김중훈 · 임종성 · 백재현 · 신창현 · 강창일 · 김정우 · 박남춘 · 위성곤 · 김광수 · 김혜영 · 이훈 · 김영춘 · 강병원 · 유성엽 · 정동영 · 인재근 · 전해숙 · 황주홍 의

- 원 발의)(의안번호 1206)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소병훈 · 강창일 · 윤관석 · 박경미 · 전재수 · 원혜영 · 임종성 · 인재근 · 김영진 · 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유승희 · 김종훈 · 추혜선 · 유은혜 · 김해영 · 권미혁 · 윤종오 · 박경미 · 송옥주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박주민 · 유은혜 · 김병관 · 채이배 · 어기구 ·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손혜원 · 송옥주 · 이연주 · 오제세 · 이철희 · 서영교 · 전해숙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김기선 · 박덕흠 · 윤소하 · 김성태 · 김세연 · 김삼화 · 김상훈 · 이명수 · 이만희 · 김도읍 의원 발의)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김상희 · 이학영 · 전현희 · 남인순 · 윤호중 · 이춘석 · 김영진 · 김해영 · 양승조 · 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유승희 · 신창현 · 제윤경 · 김해영 · 박주민 · 박남춘 · 유은혜 · 소병훈 · 김종훈 · 송옥주 · 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 발의)(이용주 · 김광수 · 이동섭 · 위성곤 · 황주홍 · 이찬열 · 정인화 · 송기석 · 김중회 · 박남춘 · 박선숙 · 김삼화 · 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7)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유승희 · 이원욱 · 손금주 · 이동섭 · 조배숙 · 전현희 · 기동민 · 설훈 · 이개호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백재현 · 어기구 · 김해영 · 안규백 · 박정 · 김성수 · 전해숙 · 김정우 · 변재일 · 서영교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윤소하 · 권미혁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동영 · 양승조 · 황주홍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유승희 · 신창현 · 최도자 · 윤소하 · 박준영 · 기동민 · 설훈 · 김경진 · 문미옥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박주민 · 권미혁 · 황주홍 · 김경진 · 박홍근 · 손혜원 · 박남춘 · 신창현 · 남인순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김경수 · 남인순 · 박주민 · 서형수 · 손혜원 · 송기현 · 신창현 · 오제세 · 윤관석 · 이찬열 · 전재수 · 최인호 · 추혜선 의원 발의)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조경태 · 손금주 · 김종로 · 이진복 · 김광림 · 홍철호 · 정성호 · 배덕광 · 박완수 · 이현재 의원 발의)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김성원 · 이만희 · 이현재 · 오신환 · 민경욱 · 지상욱 · 김도읍 · 김정재 · 김명연 · 이완영 · 김성찬 · 이현승 · 김태흠 · 김영춘 · 이개호 · 이양수 · 안상수 · 정인화 · 김중회 · 김현권 · 김철민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5)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박주현 · 김두관 · 김종민 · 김현미 · 박광온 · 박정 · 박준영 · 이연주 · 정동영 · 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832)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조승래 · 강창일 · 김민기 · 김병욱 · 김영춘 · 노웅래 · 도종환 · 안민석 · 오영훈 · 윤관석 · 전재수 · 전해철 · 전해숙 · 조배숙 · 황주홍 의원 발의)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백재현 · 소병훈 · 김영호 · 김영진 · 김정우 · 표창원 · 진선미 · 박남춘 · 최경환(국) · 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고용진 · 안규백 · 이찬열 · 김관영 · 이종걸 · 최명길 · 김병욱 · 기동민 · 민병두 · 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20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 · 박경미 · 안규백 · 박홍

- 근·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어기구·김종희·이찬열·김종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김정우·황주홍·정동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채이배·어기구·김종희·이찬열·김종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김정우·황주홍·정동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서영교·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추혜선·이정미·정성호·조배숙·김종훈·김종희·신창현·김정우·백혜련·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석·김성원·한선교·김선동·정우택·조훈현·권석창·심재철 의원 발의)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박성중·정운천·이명수·유민봉·김정우·김영진·진선미·권은희·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8)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최연혜·강석호·민경욱·이철우·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4)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표·박재호·박찬대·김정우·윤후덕·이훈·박정·송옥주·송기현·채이배·어기구·신창현·김병관·박남춘·소병훈·이정미 의원 발의)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래·설훈·이해찬·손혜원·황주홍·지상욱·송옥주·전현희 의원 발의)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김경진·권은희·오세정·장정숙·박주현·채이배·김종희·주승용·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하·경대수·황주홍·김재경·이혜훈·박용진·원혜영·박덕흠·이태규·강병원·이철희·박범계·박재호·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하·경대수·황주홍·김재경·이혜훈·박용진·원혜영·박덕흠·이태규·강병원·이철희·박범계·박재호·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강석호·민경욱·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운천·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3)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희·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3901)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이태규·강창일·김정우·송영길·황주홍·김영호·전혜숙·김상희·신창현·윤관석·김종훈·설훈·박남춘·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9)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김민기·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성원·김순례·민경욱·박덕흠·박순자·송희경·원유철·이우현·이현재·정갑윤·조원진·지상욱 의원 발의)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장정숙·신용현·김병기·이동섭·정인화·이태규·김삼화·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7)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도읍·권석창·조훈현·김정재·정태욱·이은권·전희경·성일종·이만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51)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손혜원·송기현·김종민·민병두·유동수·홍익표·이원욱·김상희·이재정·정성호·서영교·전해철·김민기·설훈·김병관·유은혜·이철희·표창원·정재호·조승래·윤후덕·김영춘·박정 의원 발의)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현아·이우현·박덕흠·김규환·김기선·곽대훈·정유섭·지상욱·김석기·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173)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명길·민병두·표창원·김해영·박찬대·이종걸·이철희·김관영·정인화 의원 발의)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이개호·전재수·이학영·박홍근·설훈·안민석·박경미·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장정숙·서영교·천정배·이동섭·김삼화·이용호·유동수·박준영·김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6)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권성동·정양석·정운천·오신환·이근현·이학재·김성태·하태경·김현아·홍철호·김세연·박인숙·이진복·강길부·홍일표·여상규·김재경·이종구·김학용·정병국·장제원·박성중·김무성·김영우·홍문표·주호영·김용태·유승민·유의동·이혜훈·이은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3)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 의원 발의)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훈식·권미혁·기동민·소병훈·윤관석·이원욱·인재근·최명길·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557)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오신환·장제원·박인숙·정운천·김성태·이진복·하태경·강길부·주호영·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원혜영·유승희·이용득·김두관·박주민·제윤경·강병원·유동수·설훈·김철민·최운열·김병기·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설훈·김영호·김상희·김두관·제윤경·이용득·강병원·김병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현권·황주홍·이철희·신경민·백재현·심재권·박홍근·김병욱·위성곤·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2)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정병국·하태경·정우택·김현아·홍철호·이양수·박성중·조훈현·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3)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중로·전혜숙·김정우·이동섭·김경진·홍영표·조배숙·이용호·천정배 의원 발의)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박덕흠·이철규·송기현·하태경·김용태·장석춘·정양석·홍일표·박순자·박명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4)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서영교·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권칠승·최인호·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63)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훈·정유섭·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3)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김영진·진선미·김정우·소병훈·박남춘·백재현·표창원·김영호·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성수·이용득·서영교·김종훈·유은혜·박홍근·고용진·김수민·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박정·백재현·조정식·이개호·최인호·이재정·문희상·우원식·이종걸 의원 발의)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홍문표·주호영·김무성·이종구·유승민·하태경·정운천·정병국·홍철호·황영철·정양석·여상규·김성태·김재경·이학재·오신환·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박지원·주승용·김경진·이태규·김종희·김삼화·오세정·천정배·김관영·박선숙·최도자·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3)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표창원·노웅래·김영호·박정·김상희·원혜영·위성곤·이철희·이원욱·심기준·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2)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정양석·김재경·황주홍·박인숙·정병국·유승민·하태경·이종구 의원 발의)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권성동·김현아·김영우·오신환·이종구·정병국·주호영·신보라·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8)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이철희·조승래·김영호·권미혁·전혜숙·유동수·강창일·우원식·전재수·어기구·강훈식·문미옥·강병원·제윤경·박경미·이용득·백재현·박찬대·설훈·유은혜·안호영·김철민·송영길·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전재수·박남춘·신창현·송옥주·노웅래·박홍근·안민석·소병훈·조승래·설훈·이용득·이해찬 의원 발의)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박영선·윤관석·김태년·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강병원·김병욱·도종환·손혜원·안민석·오영훈·유은혜·윤후덕·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2)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김명연·김승희·김태흠·정태욱·이채익·김성원·정갑윤·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981)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래·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관석·윤종오·박홍근·송기현·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장정숙·김경진·정인화·황주홍·노웅래·김관영·이용호·윤영일 의원 발의)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송기현·진영·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김세연·윤종오·조배숙·진선미·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6)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노웅래·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송기현·진영·최운열·최인호·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안규백·이원욱·원혜영·임종성·조배숙·홍의락·김관영·서

- 형수·강훈식·조승래·노웅래·김상희·권칠승·박찬대·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4)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조배숙·오세정·김삼화·권은희·주승용·최명길·최도자·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종훈·정동영·문진국·김종대·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용호·서형수 의원 발의)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노웅래·안규백·문진국·이원욱·원혜영·김병욱·서형수·조승래·권칠승·박찬대·김정우·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7)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관석·안민석·유은혜·전혜숙·김민기·이찬열·윤호중·정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유동수·이개호·유승희·백혜련·어기구·김영주·박정·권칠승·김종민·설훈·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6)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박경미·김경협·이춘석·표창원·박용진·신창현·최명길·강훈식·노웅래·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7411)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정우·김병욱·채이배·박범계·장정숙·안호영·박용진·박남춘·소병훈·민병두·송옥주·노웅래·권미혁·박정 의원 발의)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범계·전혜숙·홍익표·백혜련·서영교·이종걸·인재근·이원욱·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7529)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종석·김도읍·최연혜·곽대훈·유민봉·김기선·이명수·염동열·홍철호·신보라·김진태 의원 발의)
- (의안번호 7579)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병관·이동섭·고용진·김경진·이용호·노웅래·김영주·최운열·장병완·김관영·김성수 의원 발의)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홍문표·김성원·윤영석·김규환·유재중·김재원·최연혜·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7)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상희·이인영·박홍근·김영진·오영훈·설훈·정재호·소병훈·강창일·박정 의원 발의)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철희·윤소하·박주민·원혜영·송옥주·신창현·김철민·소병훈·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혜영·손혜원·박경미·박정·조승래·김병욱·박남춘·안규백·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8)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이은권·윤영석·추경호·박완수·김진태·윤한홍·김석기·주광덕·정갑윤 의원 발의)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이종배·이철규·염동열·김석기·이은재·권석창·이양수·이현승·강석진·김도읍·민경욱 의원 발의)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혜영·변재일·설훈·위성곤·윤소하·정춘숙·조승래·최명길·홍익표 의원 발의)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도읍·곽대훈·이채익·염동열·김정재·박명재·정갑윤·박덕흠·성일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4)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채이배·박주민·김경진·노회찬·김종대·김종민·이정미·윤소하·김영호·권미혁·표창원·한정애·

- 심상정 · 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8)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여기구 · 김두관 · 채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윤후덕 · 윤한홍 · 김명연 · 박명재 · 이양수 · 박덕흠 · 유민봉 · 조훈현 · 윤영일 의원 발의)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고용진 · 김민기 · 조승래 · 서형수 · 박재호 · 전재수 · 윤호중 · 박광운 · 박홍근 · 윤소하 · 이찬열 · 최인호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병욱 · 신경민 · 권미혁 · 소병훈 · 박정 · 윤소하 · 정재호 · 김현권 · 양승조 의원 발의)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 · 이철희 · 이춘석 · 박영선 · 표창원 · 박범계 · 손금주 · 금태섭 · 박홍근 · 고용진 · 임종성 · 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8)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강길부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태 · 박인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종구 · 이학재 · 이혜훈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 · 하태경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70)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주호영 · 이혜훈 · 이학재 · 이종구 · 김세연 · 정병국 · 유승민 · 박인숙 · 지상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8)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이재정 · 김두관 · 진선미 · 이훈 · 김현권 · 유은혜 · 윤종오 · 김정우 · 전해철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강창일 · 김영진 · 김철민 · 박남춘 · 박주민 · 설훈 · 인재근 · 정성

- 호 · 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2)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소병훈 · 박범계 · 노웅래 · 김정우 · 이언주 · 이재정 · 이원욱 · 양승조 · 김병욱 · 조승래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113)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조배숙 · 장정숙 · 금태섭 · 서영교 · 이철희 · 박광운 · 이수혁 · 정성호 · 김해영 · 김한정 · 박정 의원 발의)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조승래 · 김영호 · 표창원 · 소병훈 · 손금주 · 이철희 · 금태섭 · 정성호 · 신창현 의원 발의)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 · 정병국 · 정양석 · 이상돈 · 정운천 · 홍철호 · 하태경 · 오신환 · 김무성 · 주호영 · 이언주 의원 발의)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 · 정종섭 · 박덕흠 · 김성원 · 곽상도 · 이종배 · 이은재 · 곽대훈 · 최연혜 · 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465)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정성호 · 김세연 · 이명수 · 이종구 · 정양석 · 오신환 · 유승민 · 김철민 · 정병국 의원 발의)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강길부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우 · 성일중 · 박인숙 · 유승민 · 이명수 · 이종구 · 윤영석 · 윤한홍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하태경 · 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5)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 · 김선동 · 김성원 · 김태흠 · 박덕흠 · 성일중 · 이명수 · 이은권 · 정유섭 · 홍문표 의원 발의)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노웅래 · 김병욱 · 박정 · 이정미 · 임종성 · 소병훈 · 박주민 · 이해찬 · 김정우 · 신창현 · 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5)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유의동 · 김세연 · 강병원 · 박인숙 · 강길부 · 김수민 · 최도자 · 지상욱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7)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소병훈·인재근·표창원·민홍철·백재현·기동민·정춘숙·김영진·전혜숙 의원 발의)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박성중·문진국·이명수·강석호·장제원·金成泰·이은권·곽대훈·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3)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성일중·신상진·안상수·송희경·김명연·문진국·이은권·이종배·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1)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김영호·김철민·임종성·김종대·안규백·고용진·기동민·윤관석·민홍철·박정·김상희·김성수·김정우·서형수·소병훈 의원 발의)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박주민·하태경·오세정·오신환·김현아·김삼화·김종로·송기석·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58)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유민봉·박순자·성일중·윤재옥·유재중·장제원·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6)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송희경·이종구·강길부·홍문표·하태경·김학용·조경태·김현아·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72)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민홍철·송옥주·손금주·유동수·남인순·신창현·정성호·김정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27)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중훈·김상희·이철희 의원 발의)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원혜영·정성호·안규백·김영호·박찬대·박정·정춘숙·김현권·이철희 의원 발의)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윤상현·함진규·정유섭·유민봉·김성태·김성원·이완영·홍문표·김승희 의원 발의)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이종명·추경호·김승희·최도자·김정훈·김석기·강석진·박인숙·이완영 의원 발의)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박지원·천정배·조배숙·윤영일·박주선·유성엽·장병완·김경진·최경환(국)·김중희·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41)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권은희·김경진·김삼화·김성수·신용현·심기준·오세정·이동섭·이태규·조경태·하태경·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24)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이춘석·백혜련·윤호중·남인순·오영훈·이용득·기동민·박남춘·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65)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송옥주·추혜선·김경협·정성호·김중훈 의원 발의)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최도자·오세정·손금주·정동영·황주홍·김수민·윤영일·박지원·장정숙 의원 발의)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조훈현·김석기·박대출·문진국·김성찬·강석진·김도읍·최교일·이진복·김학용·민경욱·성일중·정태욱·유재중·최연혜·이종배·김기선·정종섭·백승주·金成泰·유민봉·신보라·주광덕·장석춘·이은권·김승희·신상진·김종석·김한표·윤한홍 의원 발의)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이은재·金成泰·박순자·장제원·송희경·강석호·홍문표·이종구·김상훈·곽대훈·김성찬·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41)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이은재·김성태·박순자·장제원·강석호·홍문표·김상훈·곽대훈·김성찬·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53)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

- 표발의)(정갑윤·김명연·최연혜·이채익·이진복·박맹우·윤한홍·김진태·김종석·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9)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이양수·민경욱·이명수·정우택·유기준·김재원·홍문중·김태흠·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5)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윤종필·홍문표·함진규·문진국·박명재·김선동·이종명·최교일·하태경 의원 발의)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원혜영·전현희·백재현·김상희·권칠승·윤영일·이동섭·김철민·윤관석·이학영 의원 발의)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안상수·김태흠·홍문중·임이자·김성찬·이헌승·함진규·이만희·강석진 의원 발의)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병기·문희상·김병욱·박정·김현권·민홍철·안호영·임종성·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33)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문희상·노웅래·소병훈·이수혁·김한정·권칠승·설훈·이개호·황희·이용득·김철민·전해철·박경미·표창원·오세정·김병기·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73)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윤영석·추경호·이철규·이만희·김석기·송희경·민경욱·장석춘·김명연·유민봉·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1)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병관·박찬대·서형수·신용현·유승민·이동섭·이상돈·정병국·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02)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윤후덕·신창현·송옥주·강훈식·황희·문희상·황주홍·권칠승·소병훈 의원 발의)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강석진·김무성·김성원·김재원·박인숙·윤종필·정유섭·주호영·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6)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윤한홍·권성동·박성중·이은권·김재경·곽상도·이명수·김선동·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75)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여상규·박맹우·추경호·이채익·성일중·유민봉·이찬열·김정재·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54)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김영우·박성중·이만희·신보라·송희경·홍철호·원유철·강석진·정갑윤·성일중·최교일·이은권 의원 발의)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진태·전희경·김성원·김학용·김성찬·홍일표·이종배·김선동·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36)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주민·서형수·손혜원·송옥주·신창현·유승희·이용득·정춘숙 의원 발의)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임이자·곽대훈·추경호·이은권·정갑윤·박명재·박덕흠·김석기·김명연·주광덕·유기준·정태욱·정중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9)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종명·김정재·문진국·원유철·권성동·정태욱·임이자·조훈현·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21)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오세제·민홍철·최경환(평)·서영교·표창원·유동수·원혜영·윤관석·윤후덕 의원 발의)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춘석·김중로·송옥주·손혜원·이철희·신경민·홍의락·변재일·표창원·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29)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임종성·강훈식·안규백·유동수·박주민·인재근·강창일·김영진·박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8)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

표발의)(신경민·권철승·박정·안규백·진선미·김성수·김해영·윤호중·변재일·강훈식 의원 발의)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주호영·신상진·김정재·이은권·정우택·함진규·정중섭·박완수·김현아 의원 발의)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권미혁·윤후덕·김상희·김경협·이수혁·윤관석·김민기·김성수·인재근 의원 발의)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박맹우·신보라·이채익·이종명·송희경·김석기·이정현·김진태·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96)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정숙·이상돈·천정배·박지원·조배숙·윤영일·김경진·이용주·유성엽·장병완·최경환(평)·김중희·김광수·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4)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신보라·박인숙·김기선·추경호·박순자·곽대훈·김순례·이만희·백승주 의원 발의)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장석춘·김성태·추경호·이종배·김정재·박순자·김성원·조훈현·서청원·원유철 의원 발의)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임이자·박덕흠·윤영석·김석기·김명연·김정재·민경욱·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2)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이찬열·김관영·박선숙·신용현·이학재·김성식·오세정·주승용·김규환·정운천·김삼화·손금주·최도자·김중로 의원 발의)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김관영·채이배·유의동·최도자·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삼화·이동섭·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60)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명수·백승주·윤종필·조경태·이현재·이종배·윤한홍·신

상진·최교일·김순례 의원 발의)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김규환·장제원·이찬열·심재철·金成泰·이태규·송희경·이은권·김순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23)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김현권·윤영일·권철승·안민석·조정식·신창현·위성곤·이수혁·전혜숙 의원 발의)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성원·주광덕·김정재·송희경·이양수·장석춘·이명수·조원진·나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73)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김중로·이동섭·신용현·임이자·하태경·김수민·최도자·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80)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김중로·이동섭·신용현·임이자·하태경·김수민·최도자·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12)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윤종필·이진복·염동열·정갑윤·원유철·함진규·김삼화 의원 발의)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권은희·김수민·이혜훈·신용현·이동섭·정병국·김삼화·오세정·정운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15)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동섭·신용현·김영호·김중로·권은희·채이배·김수민·백재현·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5)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중섭 의원 대표발의)(정중섭·이은권·김종석·김순례·김성원·성일중·김성태·문진국·정유섭·곽상도 의원 발의)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송갑석·박주현·김광수·조정식·이춘석·이찬열·김철민·고용진·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89)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김철민·권철승·고용진·송갑석·신창현·김병관·심재권·안호영·윤후덕 의원 발의)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김병욱·임종성·소병훈·김영진·신동근·김해영·최운열·전현희·이수혁 의원 발의)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유기준·신보라·김광림·곽대훈·추경호·박완수·이장우·정종섭·강효상·조훈현 의원 발의)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홍의락·조정식·김병기·김정우·박찬대·추미애·김민기·박정·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03)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권철승·손혜원·송옥주·이채익·강길부·정세균·김병기·윤영일·조승래·김종훈·박맹우·안민석·안규백 의원 발의)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추경호·박완수·김태흠·김광림·정태욱·김기선·성일종·신상진·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9)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이동섭·박선숙·신용현·김수민·김동철·채이배·김삼화·김성식·김광수 의원 발의)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수민·이찬열·김중로·정동영·김광수·조배숙·최도자·유성엽·김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68)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홍문표·유성엽·유의동·김광림·이양수·이학재·엄용수·홍철호·박맹우 의원 발의)
1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1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현승·박맹우·박덕흠·김성태·홍문표·김광림·이우현·김기선·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2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김명연·정태욱·배덕광·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2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
2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희·정재호·박광온·김병관·추미애·권철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2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훈·송기석·윤후덕·이개호·송옥주·이춘석·김철민·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
2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문미옥·이춘석·김정우·박경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2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2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정성호·박정·신창현·황주홍·황희·서영교·박남춘·박주민·소병훈·전해철 의원 발의)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상희·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김병관·이원욱·황희·박홍근·박재호·박광온·김해영·정재호·설훈 의원 발의)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홍문표·이동섭·김관영·조배숙·박준영·김종희·황주홍·유성엽·김중로·김영춘·김철민 의원 발의)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근·강

- 창일·서영교·소병훈·김정우·박찬대·강병원·윤관석·박주민·윤소하·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김무성·이종구·황영철·주호영·이은재·하태경·지상욱·정양석·김영우·박인숙·김학용 의원 발의)
-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유승희·박정·인재근·김철민·김상희·이재정·김정우·표창원·진선미·김영진·박남춘·김영호 의원 발의)
-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원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
-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이원욱·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염동열·이종배·이명수·권성동·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강병원·김병기·김영주·김철민·박주민·박광온·박정·이원욱·유승희·최인호 의원 발의)
-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권철승·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정·백재현·송옥주·안민석·오영훈·유은혜·윤관석·이용득·이해찬·정춘숙·고용진·추미애·홍의락 의원 발의)
-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여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현·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 2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김태흠·성일종·김명연·윤영석·이채익·곽대훈·김기선·이현승·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 2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오세정·김광수·장정숙·김동철·박주현·박준영·김삼화·김경진·조배숙·전혜숙 의원 발의)
- 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종희·최경환(국)·민홍철·윤소하·오세정·김성식·정인화·김광수·이용주 의원 발의)
- 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원혜영·정성호·안규백·김영호·박찬대·박정·정춘숙·소병훈·김현권 의원 발의)
- 2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경진·유성엽·윤영일·이용주·박준영·박주현·박지원·장병완·장정숙·정동영·조배숙 의원 발의)
- 2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최도자·이찬열·이동섭·김삼화·주승용·김수민·김관영·오세정·김동철 의원 발의)
- 2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안규백·김영진·심재권·민홍철·여기구·김정우 의원 발의)
- 2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병기·문희상·박정·김현권·안호영·최인호·김경협·백혜련·김민기 의원 발의)
- 2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김종민·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61)
-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수·김경진·조경태·김종희·장병완·위성곤·이찬열·이언주·김중로 의원 발의)
-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종민·권철승·전현희·송갑석·김두관·윤준호·백혜련·이춘석·정재호·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78)
-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우원식·김상희·유은혜·심상정·유동수·윤소하·인재근·이정미·맹성규·윤후덕·제윤경·심기준·박홍근·이용득·박정·노웅래·설훈·소병훈·윤준호·서삼석·신창현·박찬대·송갑석·김철민·김영호 의원 발의)

2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2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채이배·박주현·이용주·정인화·김종희·최경환(국)·최도자·김삼화·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

2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유은혜·서형수·정재호·최인호·박재호·위성곤·강병원·이종걸·윤후덕·김해영·신동근·안호영·신경민·김철민 의원 발의)

2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홍익표·황희·박재호·윤관석·문미옥·김해영·김태년·제윤경·추미애·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

2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희·정재호·박광온·김병관·추미애·권철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2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문미옥·이춘석·김정우·김성수·박정·권미혁 의원 발의)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용태·김승희·임이자·김종석·김성태·이은권·유재중·김규환·유민봉 의원 발의)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김도읍·김명연·김성찬·김영춘·김정재·김종희·김철민·김태흠·김현권·민경욱·안상수·오신환·이개호·이만희·이양수·이완영·이현

승·이현재·정인화·지상욱·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4)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민병두·최명길·위성곤·김정우·전해철·유동수·고용진·김상희·유은혜·강창일·황주홍·박재호·박홍근·이학영 의원 발의)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6)

2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선동·이현재·하태경·김성원·김성찬·함진규·이종배·조경태·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2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조승래·백혜련·김병욱·소병훈·신창현·박영선·어기구·강병원·최운열·안호영 의원 발의)

2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원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

2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이원욱·김세연·김현아·윤종오·조배숙 의원 발의)

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선동·함진규·이종배·김성찬·정갑윤·하태경·박명재·김석기·경대수·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

2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이해찬·노웅래·박찬대·신창현·송옥주·제윤경·권미혁·유동수·김종민 의원 발의)

2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유동수·어기구·신창현·제윤경·유은혜·고용진·이용득·김철민·권미혁·민홍철·박정·기동민 의원 발의)

2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
2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현·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2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경대수·김도읍·김정재·김한표·박덕흠·박명재·박완수·엄용수·이은권·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044)
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강훈식·기동민·유은혜·서영교·권미혁·임종성·설훈 의원 발의)
25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유민봉·김정재·정갑윤·정태욱·박찬우·윤영석·김성찬·이우현·염동열 의원 발의)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표창원·양승조·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6)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심기준·문희상·제윤경·김해영·전재수·김현권·소병훈·이철희·권철승·고용진 의원 발의)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천정배·이용호·장정숙·유성엽·최도자·박주민·황주홍·장병완·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86)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이은권·김종석·김순례·김성원·성일중·김성태·문진국·정유섭·곽상도 의원 발의)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상희·유은혜·심상정·유동수·윤소하·인재근·이정미·맹성규·윤후덕·제윤경·심기준·박홍근·이용득·박정·노웅래·설훈·소병훈·윤준호·서삼석·신창현·박찬대·송갑석·김철민·김영호 의원 발의)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소병훈·정춘숙·이규희·송옥주·위성곤·김성수·김영진·김성환·박찬대 의원 발의)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조훈현·이채익·박명재·정병국·이철규·정운천·홍문표·송언석·김석기·홍철호 의원 발의)
26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26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6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6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26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26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27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276.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8.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9.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80.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81.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82.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8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례대표의원도 소속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당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정당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기속성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도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정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투표 당시와는 다른 정당으로 분당되거나 합당되는 경우까지 정당기속성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당의 평균 존속기간이 3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정당기속성을 극단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국회와 정치는 국민을 더 잘 대변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당제와 합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출현과 연대를 통한 정치의 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 헌법상의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례대표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PC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8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와 함께 정치개혁특별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7건, 정당법 35건 및 정치자금법 31건, 관련 청원 19건 등 총 282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215건은 주요 내용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비례성 강화,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내 경선, 후보자 및 선거비용, 선거운동, 투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재·보궐선거,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내용 등 이상 10가지 주제로 분류하

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선거운동 자유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45건은 주요 내용에 따라 정당 일반, 정당 조직, 정당의 설립 및 소멸, 당원 가입 및 탈당,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내용 등 이상 5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구·시·군당 설립, 당원 자격 연령 하향, 공무원·교원 등의 정당 가입 허용에 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39건은 주요 내용에 따라 정치자금 및 정치자금 기부, 당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 기탁금에 관한 사항, 후원회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등 이상 6가지 주제로 분류하였고, 출판기념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 내용과 법안 및 청원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8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상정 오늘 282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김상희 위원 없어요.

○위원장 심상정 없으시면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82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각 해당 안건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이외에 향후 우리 특위에 회부되는 안건 또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법 제5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경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오늘 보충 보고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질의에서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제가 따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하고 입법조사관실에서, 행정실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치개혁특위 논의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위 논의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헌국회에서는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5대 국회에서는 양원제 실시와 함께 참의원을 대선거구에서 선출하였습니다.

6대 국회에서는 전국구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제9대 국회에서는 1선거구당 두 사람 선출의 중선거구를 도입하였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제13대 국회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였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1인 2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표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구의석 비율은 혼합식 비례대표를 채택하는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지역 대표성 외에도 계층적 대표성, 정파적 대표성을 반영할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지역 균열, 계급 균열, 세대 균열 등 다차원적인 균열 구조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의 비율은 17만명 중 1명으로 호주, 스페인, 영국, 프랑스보다는 많고 미국, 일본, 멕시코보다는 적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국민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질수록 대표

성과 반응성이 낮아짐으로 인해 민주성이 약화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례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왜곡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율로 50.7%의 의석 점유율을 차지하고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54%의 정당 득표율로 41%의 의석 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불비례하게 되어 있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표가 사표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대표하도록 국회를 구성해야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있었고 비례성은 정치적 대표성의 정확성, 굿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유권자와 정당 간 정책적 연계의 취약성과 한국 정치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선거제도의 개혁이 비례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현행 지역구 선거는 인물에 대한 투표이며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투표를 실시하여 정당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의 연계입니다.

국회는 헌법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당제 경향을 가져오는 선거제도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적절한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헌법개정안이 도출되면 그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역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중선거구제와 권역별·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도 개편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6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도·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중심이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7대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 논의되었고, 향후 제18대 국회에서 각 정당의 지역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패율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의결 시 부대의결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청회 등에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가 제안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률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개특위,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집중 심사되었습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입니다.

첫 번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세 가지 현실적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의미한 수준의 비례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적정 수준의 의원정수 유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 가능한 대안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배분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초과 의석의 발생을 줄여 의원정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정당의 관점에서 지역구 의석의 증가가 총 의석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역 대표성 실현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입니다.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배분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도농 격차와 도시 생활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 지역의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희생하는 방안입니다.

도시 지역의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에서 비례성이 일부 달성되어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정당의 관점에서 지역구 의석의 증가가 총 의석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역 대표성의 포기를 도시 지역에서만 집중하고 의원정수 증가를 최소화함으로써 비례성을 달성하는 방안,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과별정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립형 유지와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한 견해입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만을 배분하는 현행 의석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인원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같은 수준의 비례성 달성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필요로 합니다.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낮은 수준의 비례성 달성에 만족하거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합니다.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정수 규모의 변동성은 감소합니다.

지역구 의석의 확보가 정당의 총 의석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병립형 유지 플러스 중선거구제라는 견해입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및 의석배분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준의 비례성 달성은 어려우나 사표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비례

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 비율을 감소시킨다면 비례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대표성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의원정수 증가를 억제하고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식, 다만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의 경우와 같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대표성, 과별정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었거나 법안으로 제출된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요, 순서를 정하지 않고 토론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순서를,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발언시간은 7분으로……

○위원장 심상정 충분히 쓰세요. 일단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모두 회의들이 겹쳐 있어서 위원님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도 발언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과도 즉 보고를 해 주셨고 또 법안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핵심 사안이 선거구제의 개편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난 19대 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정치 개혁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표심의 왜곡 현상을 제대로 바꿔서 선거제도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한 것이고 더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가장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정치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선관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에는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300석을 고정시켰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과 정치권에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앙선관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정치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그대로 선관위에서 제안하는 선거제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300석이 아니라 의석수를 더 확대해서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300석으로 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원회 조직인데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의석수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는 그래서 지난번 19대 국회 때 2015년도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금 300석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제시된, 법안으로는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늘 보고해 주신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사실 법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법안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법안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토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토론이 됐던 부분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전국 명부 형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지금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논의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선거제도를 놓고 또 추가적으로는 새롭게 우리 정치개혁 특위 차원에서 각 선거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지금 법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몇 가지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에서는 논의가 어렵고 내놓은 법안 중심으로밖에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고 또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상정 김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요. 이 방안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정개특위가 논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또는 일정, 여러 가지 전략에 관한 논의까지 포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가 열리고 있는 상태라 먼저 질의드리고 또 이석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논리적으로 또 국민과도 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차분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논의가 있습

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개선되면 정치가 좀 더 나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비례성이라는 것은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점으로 논의되다시피 사표가 많아지고 그래서 의석수하고 득표수하고 불비례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의견이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비례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 좋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게 보면 현재 소선거구 단순대표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적인 정치적 다양성을 그 견해의 분포대로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게 일반적인 단점으로 거론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에게 더 품질 좋은 정치가,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의식 분포를 통해서 대의기관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의견을 절충하는 데 있어서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더 필요하고 또 정쟁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정치가 흘러가지 않는 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난번 2015년도에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자를 어떻게 당선자를 가려낼 것인가에 관련해서 당시 선관위는 지역구에서 가장 아쉽게 낙선한 사람들이 비례대표 명부 속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안을 놓고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안을 선관위에서 토론을 해서 내놓았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것은 비례성 확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당 지지도의 지역 편중이나 지역 구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중에서 지역구에서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로도 입후보하게 해서 그 권역에서,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낙선한 분들끼리 경쟁해서 그나마 그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분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비례대표 의원이 있게 함으로써 정당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 정당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비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냥 비례대표를 늘리기만 한다면 지역 기반이 한정되어 있는 정당은 계속적으로 지역 기반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니까 지역구로 나가서, 유능한 분이 비례대표로 나갈 수도 있고 지역구로도 나갈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좀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정당도 지역구에 많은 후보들이 출마함으로써 지역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사실은 한국에서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면서 정당의 공천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이 많고 현행 비례대표의 경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공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구에서 낙선해서…… 그러나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아깝게 낙선한 분들이 만약에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공천 명부 순위를 가리는 데에서는 여전히 정당이 더 정치 개혁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비례대표로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하자고 여러분들은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9대 국회 때의 논의나 과거의 논의를 보면 지역구의 경우에는 완전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정당명부제와 결합하기에는 논란이 좀 많을 것 같고 일부 농촌은 소

선거구제로 하고 일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의 틀 속에 한번 정리를 해 보자라는 이런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한 분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선거구제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정당명부를 전국으로 할 것이냐 권역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연동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구를 소선거구로 할 것이냐 중선거구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선거구로 하는 것하고 중선거구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중선거구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초과 의석 발생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중선거구로 했을 때 선거비용이 과다하다든가 유권자들이 좀 혼란을 겪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오늘 저는 다시 원론적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고 하는 원론적인 방향의 취지부터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 선관위가 제시한 안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상정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저는 준비해 주신 선관위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제가 지난번 정개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정개특위의 통과된 법안은 놀랍게도 딱 2건입니다. 물론 이름같이 헌법도 같이 논의한 큰 성과도 있었지만 정개특위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지방선거구 획정하는 법안하고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당·탈당 신고

전자사본으로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딱 이렇게 2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가.

그리고 막판에 12개의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완전 합의를 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일명 관공서 등 호별방문 문제, 대상에 대해서 제외한다 이것에 대한 이견이 걸려서 각각 의원님들이 제출한 12개의…… 그래서 결국 시도한 것은 총 14개입니다, 헌법을 제외하고.

물론 그 중간에는 방금 논의하셨던 선거구제 개편,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했는데 저는 선관위보다는 위원장님한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에,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잘 정리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197건, 정당법이 35건, 정치자금법이 31건, 관련돼서 19건 해서 총 282건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특위를 보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중의 일부인, 어떻게 보면 제일 본체라고 말씀하시는 선거구제 개편·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는 큰 담론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타협이 안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선거운동 방식, 투표, 참여권 등등 이런 문제와 또 정당법과 관련돼서 선관위에서 제안한 구·시·군당 설립 문제라든지 당원자격 연령하향 문제라든지 정당가입 허용범위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문제 제기한 영역도 몇 백 건의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지는 것은 우리 소위가 기왕 이렇게 2개 소위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1소위는 거대 담론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열고,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비교섭단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안들을, 내부 의견들을 모아 오는 작업이 1소위에서 제일 큰, 아마 절반 정도는 성과를 보이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로 정치개혁2소위는 그 어려운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오늘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했겠지만 상정의안 주요 내용을 1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각 당에서 나름 수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든 당내에서 하시든 소위에서 범위를……

오늘 제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열 가지 주제로 분류했고 정당법 45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예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 주제로…… 그러면 큰 틀에서 열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머지 제도개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 대표되는 간사님이나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여부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지난번 특위에서 2건 통과와 12건의 미수 사건이 이번 특위에서는 좀 성과 있게…… 이게 우리 국회의원만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성이 현장에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큰 담론 얘기하다가 구체적이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 놓치지 않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박완주 위원님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2소위를 맡고 계시는 정유섭 간사님께서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소위원회를 좀 밀도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개특위 간사님들 간에 아주 깊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쭙 보고……

중선거구제, 대선선거구제 또 어떤 때는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데 중선거구제는 의원을 몇 명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들 협상할 때는 3인 이상을 대선선거구제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7페이지에 보면 ‘중선거구제(2~4인)’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원 숫자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상이한 것을 좁혀서 논의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글썄요,

그게 딱히 몇 석부터 몇 석까지가 중선거구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상은 대선선거구 같은 경우 비례대표를 대선선거구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중선거구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따져 봤을 때 2~4명, 5명 정도까지…… 더 넘어가면 사실상 구역이 너무 넓어지고 또 유권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통상 2~5명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인호 위원 중선거구제를 5명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중선거구제는 몇 인까지를 선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건지, 대선선거구제는 몇 인인지 어느 정도는 합의를 봐야 좀 효율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지요? 그렇지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선거구가 합쳐질 수 있는 사정들을 살펴 가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우리가 선거구제 문제에서 의원정수를 축소하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총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지금 현재의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난번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구 확정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 위원 연동형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연동한다 했을 때 비례성의 기준을 보통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식이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정당득표율뿐만 아니고 각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총합이 있을 겁니까, 그게 권역이든 전국 단위가든 간에. 만약에 권역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 총합을 함께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선관위에서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최인호 위원** 처음 듣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처음 듣습니다.

○**최인호 위원**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을 시행해 본 일이 없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정당득표율만 가지고 연동형의 비례성의 기준을 선택하면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의 여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아주 정치된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니라서 그런 의문점은 갖고 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소위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나 전문위원님들은 이와 관련된 최근 역대 선거 몇 차례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권역별로도 해 보고 전국 단위로도 해 보고 그러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얼핏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최인호 위원**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득표가 나와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게 어려움이 지역구의 후보자를 몇 명이나 추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떤 정당은……

○**최인호 위원** 아니, 역대 선거. 최근 선거는 숫자 나온 거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과거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후보자 수로 나눠서 득표율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득표율이 높은 지역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최인호 위원** 그런데 권역별이라는 것은 지역당의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도입하자는 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총장님께서도, 어차피 선

관위도 권역별로 제안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19대 때? 그래서 지역정당의 출현 그 자체를 꼭 부정적으로 전제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것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최인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네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네 가지 각각의 시뮬레이션, 최근의 선거에 대입한 결과는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네 가지 다 해 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개정의견으로 제시했던 소선거구하고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 것을 다음 소위 때 자료를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다음에 원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님 순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장제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시 왔다 가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중앙선관위 안이 나왔나,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아닙니다. 의원정수에 대한 안은 없었고요.

○**장제원 위원** 의원정수를 안 늘리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떻게 도입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어쨌든 저희가 제시하기로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개정의견 안 그대로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하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현재 소선거구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장제원 위원** 어느 정도로 늘리면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거기에는 초과의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위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정서에 맞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보좌진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정수를 늘려 가지고 총액을 해도 조금 있으면 슬그머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 전체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300석을 일정 부분 지역구에서 줄이고, 줄인 만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를테면 큰 도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갑·을·병·정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문화권과 같은 생활권에 있는, 또 동을 구체적으로 나눠 가지고 바로 옆 동은 이쪽 선거하고 이 동은 이쪽 선거해요. 과연 이것이…… 지역 대표성을 과다하게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갑 지역에서 A라는 후보가 49%를 받고 낙선을 합니다. 바로 옆 동은 35%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돼요.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받드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선거

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큰 구, 큰 시에서 이렇게 인구를 과다하게, 지역을 과다하게 대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선거구를 도입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장단점은 그런 게 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결합해서 얘기할 때는 초과의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근지역 간에 득표율 차로 인한 당선·낙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의 단점도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단점에 대해서는 알고요.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9%를 받았으면 당연히 중·대선거구제는 당선이거든요. 그런데 35% 받은 사람은 당선인데 아마 예를 들어 그 한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 몇 명을 뽑았으면 낙선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일 경우에 지역을 과다 대표하고 있다……

그다음에 농촌으로 가면 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른 시·군·구를 4개, 심지어는 5개를 묶어서 1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면적을 너무 과다 대표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도시에서는 인구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구를 과다 대표하고 있고 또 농촌으로 가면 면적을 과다 대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문화와 생활환경이 다 같은데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고 있고 한쪽은 문화와 생활환경이 다 다른데 1명이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런 식의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구제를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하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놓고 적절하게 의석수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여 줌으로 인해서 의석수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동

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선거구제 개편에 맞물려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구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점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지역구 문제하고 비례대표 문제하고? 그 가운데에서 의원정수가 도출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아까도 제가 위원님 오시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지금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으로 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할 것이냐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지역구를 소선거구로 할 것이냐 중선거구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변수를 놓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각각의 조합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어떤 것이 가장 맞는지 부분을 찾아가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장제원 위원 단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조금 몇 포인트만이라도 짚어 주실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일단은 중·대선거구제 부분은, 일반적인 단점입니다, 선거 구역이 넓어지면서 선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지역구 관리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유권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재·보궐 선거 같은 것 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단점들이 일반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지역……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장제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의 주문이 있으셨고 또 장제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모델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위원님들이 내시는 의견 하나 하나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논의할 때 용어의 개념을 좀 숫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대선거구제를 2인에서 5인까지, 숫자를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말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아닙니다. 딱히 몇 인부터 몇 인까지가 중선거구제다 이렇게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너무 많아지면 구역이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원혜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몇 명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립된 게 없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2~5인까지를 중·대선거구제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할 때 2인에서 5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 자료, 논의경과 보고의 1페이지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서 제9대 국회에서—여기는 그것만 썼는데—12대 국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구축한 이래 전두환 체제까지 ‘1선거구당 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 도입’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중선거구제로 하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제의 이미지가 역사적 기억, 이것과 함께 항상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중선거구라고 안 부르고 동반당선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어쨌든 1인이 넘는 2인 이상의 복수니까 중선거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선거제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개혁이 아

나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만 그중의 한 부분으로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혼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쓴다고 하면 이 중·대선거구제의 개념을 3~5인으로 숫자를, 적어도 합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유신체제에서 전두환 체제까지의 2인 동반선거제도를 중선거제라고 오랫동안 불러온 것과의 혼동을 좀 정리해 주는 의미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인이라는 것은 별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시뮬레이션하면 일부 5인, 대선거구제에 가까운 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경우가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주장한 학자나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숫자 범위를 어느 정도, 단일 숫자로 3인·4인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에서 몇 명까지를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르자 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비례성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득표율로 50.7%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25.54의 정당득표율로 41%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역시 이 예는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소한 제안입니다만 좀 대표적인 사례로서 꼽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거 결과로 꼽기에는 역시……

19대에 새누리당이 42%의 정당득표율을 얻고 50.7%의 의석점유율과 함께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38.5%의 득표율을 얻어서 50%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병기하는 게, 과반 득표를 못 하고 의석은 절대 과반을 확보한 두 가지 대표 사례로 같이 소개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하신 말씀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일 위원 참고자료 19페이지 보면 타이완의 의원수를 225명으로 이렇게 써 놔는데 113명으로 준 것 아닌가요? 확인을 하신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타이완은 225명을 반으로 줄여서 113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고일 위원 줄인 것도 2004년에, 아주 오래 전에 그렇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산시의원 같은 경우가 2014년, 4년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부산시의원 42석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다른 당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금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8석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이 4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구청장 25자리를 한국당이 전부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4석을 차지하고 한국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원선거를 보면 2006년에는 역시 새누리당이 129석 전석을 차지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28석을 차지하는……

그런데 혹시 실제 투표율은 알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아마 비례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최고일 위원 그때 투표율은 50%가 안 되는데 이렇게 100%씩…… 그래서 특히 지방선거에서 비례성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그러면, 둘 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비례성도 있어야 되고 대표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것을 좀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클쎬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일 위원 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통상적으로는 비례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일 위원 비례성을 조금 중요시하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표성보다는 비례성을 좀 중

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가 비례성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외국에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일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있는 지역구가 영주·문경·예천인데 서울의 3.7배입니다. 서울의 국회의원 수가 마흔아홉 분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49석입니다.

○최고일 위원 49명인데 서울의 3.7배 되는 곳에서 국회의원이 1명이고 만약에 저희 지역구가 중·대선거구가 돼서 이웃의 봉하·영양·울진·영덕 여기하고 합쳐서 국회의원 두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면 서울의 한 8배 정도, 국회의원 마흔아홉 분을 뽑는 지역구의 8배에 해당하니까 지역으로는 너무 차이 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고일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유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완주 위원님 계셨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셨네요.

박완주 위원님이 선배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서 지난 정개특위의 경험,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2건밖에 법안 통과시킨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거구제 또 개헌 이런 것 다 논의만 했지 결과가 없었다는 경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소위·2소위 나누어져 있으니까, 1소위가 가장 어려운 선거구제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거고요. 2소위는 좀 가벼운 것들은 여러 번 만나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여러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중선거구제 하면 ‘그 당의 당론이 중선거구제냐? 하고, 연동형 비례 얘기하면 ’당론이 그거냐? 개

인 의견이냐?’ 또 그게 무슨 언론뿐만 아니라 각당의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당론이라는 것이 아직 없거든요. 의원들 의견도 모아야 되고 또 당에서도 여러 토론회나 의원총회나 또 설문조사 여러 가지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정개특위에서도 다음 주에 공청회를 시작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타협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각 당의 입장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선관위도 굉장히 입장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컨센서스하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 그런 저기는 있는데 선관위도 입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4개 안을 낸 것 같아요. 4개 안을 죽 내셨는데 4개 안을 보면서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개 안을 죽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그런 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대통령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대통령제인데, 선관위에서 2015년에 제안해 가지고 도입에 실패한 독일식의, 다른 나라 여러 방식이 있는데 독일식의 방식을 지난번 특위 회의에서도 첨부해서 내놓으셨어요. 굳이 독일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독일은 우리하고 여러 여건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내각책임제이고 또 우리하고 달리 연방제 국가이고,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아주 확실한 그런 연방제 국가의 제도인데 독일 방식을 첨부했고, 도리어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거나 중앙집권적인 그런 나라의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 방식을 선관위에서 제안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저희가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견으로 낸 이유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학계든 정치권이든 여러 의견들이 의석수하고 득표율하고 불비례성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동시에 독일식하고 저희들이 제안했던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동시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자는 건데요. 그 중복입후보제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 것은 지역구도를 좀 완화하자, 그 두 가지……

비례성 강화 그다음에 지역구도 완화,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그 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유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섭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선거제도 개편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개헌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내각책임제로 바꾸면서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다수당이 나와서 연정도 하고 연합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비례성을 많이 강화하고 또 연동형도 하고 이러는 게 맞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이렇게 연동형 비례제나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맞냐 하는 그런 논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 개헌 문제하고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하는 게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지금 저희가 정개특위 하면서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모아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상정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저는 사무총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쟁점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안을 뭘로 할 거냐에 앞서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과연 우리가 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면 어떤 원칙에서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으로 발 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례성이라는 것은 민심이 비례적으로 의석, 국회, 의회에 대표되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김종민 위원 그래서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들의 주권이 민주적으로 의회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기준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례적으로 반영되다 보면 주권자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계층적으로·정파적으로·지역적으로. 이 다양한 주권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서 결국 다양성이 의회에 소화가 된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합의 기능, 이른바 공화성이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민주성·공화성 이 두 가지 핵심요소가 비례성의 증진을 통해서 의회에 반영된다 이 점에서 저는 꼭 필요한, 그래서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역구도 완화라고 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붙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보면 결국 비례성에 대한 갈증, 비례성에 대한 강조 이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하는 기존의 과제를 비례성의 강화라고 하는 원칙에 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동안에 너무 비례성 얘기만 계속 해 오면서 대표성 얘기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표성이다 그러면 현재 대표성은 지역 대표성이 있겠고 계층적인 대표성 또는 정파적인 대표성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서 국민 전체를 의회가 대표하고 있는 국민 대표성, 대표성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성을 내용적으로 보면 대표성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반응성과 책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의회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표 있는 사람 누가 얘기하면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바로 반응하거든요.

그다음에 책임성,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의 일반 여론, 국민적 대표성이 과연 의회에서 반영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지역

구 중심의 지역 대표성이 과잉됐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성,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되게 높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 일반의 일반적인 의지, 일반적인 목소리, 일반적인 메시지에 대한 의회 전체의 국민적인 대표성은 되게 낮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의회에서 해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원하는 건 해결이 빨리빨리 돼요. 그리고 계층 대표성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요. 정파적 대표성은 정당, 원내대표나 정당 지도부 등에서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제도를 보면 지역 대표성과 정파 대표성이 강한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과잉되어 있고 계층적 대표성이나 제일 중요한 국민 대표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성 문제에 대한 뭔가 고민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조절이 저는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지역구제도를 놔두고 지역 대표성을 완화시키는 건 어려워요. 독일도 지역구가 1이고 비례대표가 1이지만 비례대표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국민 대표성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자기 시간의 반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 전체가 국민 대표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와 지역대표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나라들은 다 지역구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는 다 지역구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정치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래 한 나라들이지요, 오래 한 나라들이지. 선진국은 오히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거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로의존성 때문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데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성…… 물론 어떤 안이 가능하냐,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구에서 40% 당선자와 10% 당선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표성의 불공정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석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든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이른바 비례대표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사실상 대선거구제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 시도 단위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니다. 8~15석을 뽑는 그 정도의 선거구면 대선거구 같은 건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안이 보통 5석, 6석까지 포함되어 있던 말이에요. 10석을 뽑는 것을 정당명부에서 비례적으로 뽑게 되면 이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하고 일부가 반영되어서 수용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검토하는 이런 논의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총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아닙니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수석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대표성 확보의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예.

○김종민 위원 여기에 ‘지역 대표성 외에도 계층·정파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층·정파뿐만 아니라 국민 대표성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개념을 조금 더……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아주 깊은 의견 주신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하고 정양석 위원님 말

숨……

○정양석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심상정 위원장께서 모두발언하실 때 국회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셔서 연관되어 있는 얘기인데, 국회가 국민들에게 정말 개혁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압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정치자금법·정당법 몇 가지를 다 통괄해서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하히 잘 진행하면서도 선거구제 문제나 아니면 의원정수 문제 이것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뭔가 국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앓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대표성과 비례성들을 어떻게 현행 시스템들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정수 문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하히 같이 공론화 작업들을 통해서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여론들을 확산시켜 내는데 성공해야만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혁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과와 시민사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되어야 되고 현행 지역구 253석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선거구제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구제를 바

꾸라고 요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정치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구요.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인구,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OECD 회원국 총인구와 GDP 규모, 정부 예산, 공무원 수 등을 비교한 적정 의원수가 368~379명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적정 의원수를 따지면 50명 정도 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프랑스 상·하원 합쳐서 상원은 348 하원은 577, 영국은 상원이 845 하원이 650, 독일은 상원이 69 하원이 598, 일본은 상원 242 하원이 480,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100 하원 43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선거구제와 더불어서 의원정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와 조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선관위에서 의원정수 조정과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쪽 수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기동민 위원 계획도 없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든지 학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혹시 다른 여론조사나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확인된 것도 없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 여론을 들어 본 여론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당 차원에서도 나서야 되겠고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도 나서야 되겠지만 선관위에서 사실 어찌 보면 선행작업적 의미로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거구제 개

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학계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도 개발하고 또 고민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들을 충분히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해 보겠고요, 정개특위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원정수 조정 문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 정당이 다 뼈를 깎는 자구안 그리고 국회개혁안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고비용 문제가 자꾸 나온다면 300명을 정수로 하든 아니면 그 이상을 정수로 하든간에 그동안 해 왔던 정수에 준하는 총액 예산을 묶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선관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개특위 차원에서 간담회·좌담회 혹은 여론조사 이런 다양한 여론 확산 작업 그리고 또 사전 공론화 작업 이런 부분들에 진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좋은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겸임해서 상임위원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지금 국감 중이고 또 예결특위가 열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왔다가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국민의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근본적 필요성에 좀 더 집중해서 의견을 모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인데 지역 편중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인 논의를 좀 더 해 보자 이런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표성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역구의 과다 대표성을 국민 대표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 또 계급이나 세대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점을 종합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이 있으셨고요.

특히 대표성과 관련해서, 1인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과다한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구제 입장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명당 얼마만큼의 인구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석인데 299석으로 확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심상정 그 뒤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8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988년도 13대 국회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13대, 88년도에 인구가 혹시 몇 명이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제가 보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300명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현재 5000만 인구를 대표하는 데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선거구제와 별개로 논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논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다른 나라 사례도 있을 테고요 또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례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아까 연동형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중·대선거구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방안에 따른—시물레이션을 포함한—대안 검토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위원장 심상정 그리고 지역 편중성과 관련해 서는 아까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대표성 강화, 비례성 강화, 지역 편중성 완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에 걸맞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의결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4일은 국회의장님 주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치개혁제1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심사) (11인)	◎김종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4)
	김학용 임이자 장제원 정유섭	자유한국당(4)
	김성식	바른미래당(1)
	심상정 천정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정치개혁제2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외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 자금법 심사) (11인)	기동민 김상희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더불어민주당(5)
	◎정유섭 정양석 최교일	자유한국당(3)
	김동철 김성식	바른미래당(2)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3인)

기동민 김상희 김성식 김종민
박완주 심상정 원혜영 장제원
정양석 정유섭 천정배 최교일
최인호

○청가 위원(2인)

박병석 임이자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주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박영수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장석춘	최교일	자유한국당	2018.11. 7.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6. 안상수·홍문표·유성엽·유의동·김광립·이양수·이학재·엄용수·홍철호·박맹우 의원 발의)

10월 2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김성원·윤상현·이은권·경대수·함진규·김정재·김명연·성일종·정유섭·이현재·이양수 의원 발의)

10월 3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2. 박인숙·정진석·김성원·김세연·송희경·김명연·정태옥·김석기·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

11월 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5. 경대수·황주홍·염동열·여상규·박덕흠·최연혜·강석호·김재원·이종배·김현아·엄용수·정진석 의원 발의)

11월 6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6. 8. 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근용 외 1인으로부터
진선미·권미혁·김종훈·남인순·박주민·
신동근·이재정·이정미·이학영·정춘숙·
홍익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 2016. 10. 18. 한국정치학회장 강원택
으로부터 김세연·유승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

(2017. 1. 18. 우리가 주인이다 대표 김영신 외
5,708인으로부터 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3.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외 2인
 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3.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충재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9. 우리미래 공동대표 이성윤 외 7인
 으로부터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

(2017. 9. 20. 부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김낙경
 외 16인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5. 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동섭으로
 부터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5. 정치개혁 부산행동 고희석 외 7인
 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목 외 3인
 으로부터 노희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외 3인
 으로부터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문창기
 외 13인으로부터 이상민·김광수·변재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 2017. 9. 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외 3인으로부터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10. 17.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권수현 외 3인으로부터 남인순·권미혁·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11. 22. 광노현 외 2인으로부터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19건 2018년 10월 30일 회부됨